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추천인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3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추천인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추천인의 처우개선 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u>

③ <u>보건복지부에 두는</u> <u>처우개선위원회</u>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u>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u> <u>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u> 3.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4.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5.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u> ④ <u>그 밖에 보건복지부</u>-----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중앙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적정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정책 추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임.

- 중앙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앙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소 속	직 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문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선임연구위원
각 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사 등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단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시민단체	한국치매가족협회	회장
		변호사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중앙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요건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시행령과 개정안의 비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 정 안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우선,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등¹⁾으로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연합되어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와 타 분야 노동자들이 서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를 통해 노동권 강화 및 사회적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을 구성하는 종사자 단체와 시설운영자 단체, 그리고 중립적 시민단체에서 각각 위원을 추천받는 현재 위원회 구성의 균형이 일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및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얹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핵심 이슈가 희석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노동조합’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의 층위를 갖춘 체계로 구조화하여 그 설립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의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혹은 ‘노동조합’ 외에 행정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자의 일반 조합까지를 광의로 포함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정안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³⁾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연합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2023년 기준 총 479,75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2,737,379명) 대비 약 17.5%에 해당함.

(한장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통합노총) 및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등 총 6개가 있음.⁴⁾

- 참고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명시한 경우(「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제4항제5호나목⁵⁾)와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한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제1호⁶⁾)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라 하여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 대신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⁷⁾) 등이 있음.

4) 고용노동부, 『2022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3년 12월.

5)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④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의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며,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유연한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대변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위원 구성 항목에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총 3인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인데, 사회복지현장의 노조 가입률이 낮아⁸⁾ 전국단위 노동단체가 일선 사회복지현장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 개정안은 처우개선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위원회가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기구로 기능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97

8) 보건복지종사자의 노조 가입률은 6.6% ('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며, 사회복지 현장으로 한정할 경우 노조 가입률은 1.2%로 더 낮다는 의견도 존재함 ('24년 민주노총 보도자료)